의안 번호 1282

#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#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연월일 : 2016. 11. 11.(금)

나. 제 출 자 : 이효상 외 7명

다. 위원회회부 : 2016. 11. 16.(수)

라. 위원회심사 : 2016. 11. 22.(화)

#### 2. 개정이유

- 최근 핵가족화, 고령화, 배우자 사별, 이혼가구의 급증으로 홀로 사는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, 노인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
- 홀로 맞이하는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노인의 사후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 위기 형성과 건강한 노후를 보장 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(안 제2조, 제3조)
- 나.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고독사 예방체계 사업추진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5, 제6조)
- 라. 고독사 예방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마. 노인 고독사 예방 공적자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#### 4. 근거법규

가.「노인복지법」제4조, 제27조의2

#### 5. 검토의견

-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단독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,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, 홀몸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 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의 사후에 대한 건전한 사 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## 〈관계법령〉

#### □ 노인복지법

-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 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다.
-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 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 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한다.